

	<h2>계약학과운영규정</h2>	규정번호	3-4-5
		제정일자	2013.09.01.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5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의2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학칙 제4조의 2(계약학과)와 같다.

②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계약학과의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과 상호 협의로 체결된 운영계약서에 따라 정하되, 당해과정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하고, 해당학과 전임교원,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되도록 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생성공처장, 대외협력처장,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협의에 관한 사항
2. 본교와 산업체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재학생 퇴직 또는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학생 보호등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입시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 학생의 선발은 본교 입학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로 나누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이상으로 한다.

④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